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성년자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 원칙 규정〉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646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미성년자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 원칙 규정	3
2. 관계기관 의견	1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우영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7. 12.

3. 회 부 일 :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3개월의 법정기간을 적극적인 선택 없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를 구제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음. 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13일 민법 일부개정 공포한 바 있음.

따라서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들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하였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 초과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도록 하여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성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승계 받지 않도록 함(안 제1019조제4항).

나.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명시하되, 안 제1019조제4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하는 것이므로 그 보호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일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경우와 이 법 시행 당시 성년자이나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이 의제되고,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까지 안 제1019조제4항이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특례를 규정함(부칙 제2조제2항).

III. 검토의견

1. 미성년자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 원칙 규정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승계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1019조제4항).

현행	개정안
第1019條(承認, 拋棄의 期間) ①~ ③ (생략)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1019條(承認, 拋棄의 期間)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승계하지 아니한다.

나. 현행 「민법」 상 미성년자 관련 상속제도

(1) 상속의 승인

현행 「민법」 제1005조¹⁾는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

1)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속권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법률상 당연히 포괄적으로 승계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연승계주의” 또는 “포괄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음²⁾.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³⁾이나 한정승인⁴⁾ 또는 포기⁵⁾를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제1019조제1항⁶⁾).

상속인이 위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등을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함(제1026조⁷⁾).

한편, 현행 「민법」 제1019조제3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 경우,

2) 민유숙, 「주식 민법(상속)」, 한국사법행정학회, 2020. 7. 173~174면.

3)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는데,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경우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됨(「민법」 제1025조).

4)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이 경우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게 됨(제1028조).

5) 상속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재산상 권리·의무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됨.

6)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7)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음⁸⁾.

다만, 상속의 승인·포기는 재산상의 행위이므로 행위능력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민법」은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하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최초 상속의 승인·포기의 선택 및 특별한정승인의 고려기간(3개월)의 기산점으로 봄(제1020조).⁹⁾¹⁰⁾

(2) 미성년자 상속인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특별절차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에 있어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승인·포기의 선택 및 특별한정승인의 고려기간 기산점을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8)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9) 「민법」 제1020조(제한능력자의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0) 한편, 제1020조는 제1019조제1항을 한정하여 인용하고 있으나, “제1019조제1항 및 제3항의 각 고려기간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제척기간인 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정대리인 제도와 민법 제1020조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제1019조제3항 역시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임(대법원 2020.11.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20. 11. 19. 선고 2019다23918 전원합의체 판결).

이에 제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10건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고¹¹⁾,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마련된 대안이 2022. 11. 24.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12. 13. 공포(법률 제19069호)되었는바, 그 내용은 상속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였더라도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임(「민법」 제1019조제4항 신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

1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974호),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751호), (최기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0760호),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268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180호),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252호),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10호), (유기홍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5085호), (정부제출, 의안번호 제2116821호), (김희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7069호)

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2022년 12월 「민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미성년자 상속인의 한정승인 특별절차 규정(제1019조제4항)에서 더 나아가 미성년자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승계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미성년자의 상속승인에 한해서는 당연승계주의(단순승인)가 아닌 한정승인을 원칙화하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민법」은 상속에 있어 당연승계주의(단순승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한정승인은 법률이 정한 일정 절차를 거쳐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바¹²⁾,

- 12)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한정신고의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됨(「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제40조).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제40조(심판의 효력발생 시기)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받음으로써

한정승인 절차 없이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에도 예외없이 한정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상속 비용을 증가시키고 상속절차를 번거롭게 만든다는 지적¹³⁾ 등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에 한해서는 법률 규정을 통해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은 미성년자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승계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한정승인을 원칙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당연승계주의(단순승인)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상속법 체계와의 정합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①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으로 상속 개시시점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상태인 미성년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그렇지 않은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단순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②개정안은 현재 단순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신고

발생한다. 다만, 제43조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제44조(관할 등)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

13) 윤진수,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1997. 191~192면.

및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을 통해 예외적으로 상속의 한정승인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상속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2년 12월 「민법」 개정을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미성년 상속인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을 의제하는 법률안¹⁴⁾이 함께 논의되었으나,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정승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현행 「민법」 상속 승인구조를 역전시킨 것으로 상속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¹⁵⁾이 제시되어 미성년자 상속인이 현행 「민법」 제1019조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 특별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게 하였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 개정안과 같이 미성년자 상속인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원칙으로 규정한 경우 현행 「민법」의 한정승인 절차 규정도 함께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¹⁶⁾, 한정승인 신고에 대한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¹⁷⁾, 한정승인 이후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바¹⁸⁾,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974호),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10호)

15)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시 의견 참조[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자료(2022. 9. 22.) 참조]

16) 「민법」 제1030조,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현행 「민법」상 한정승인의 경우 가정법원에 대한 신고를 전제로 하여 효력발생과 재산관계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 효력만 규정할 경우 한정승인 절차 진행 등이 모호해지게 되므로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⁹⁾.

17)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제40조

18) ①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절차(「민법」 제1032조), ②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 변제한 후 일반상속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민법」 제1034조), ③유증의 이행(「민법」 제1036조)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①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제1036조(수증자에의 변제) 한정승인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지 못한다.

19) 미성년 상속인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의제하는 법률안(「민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09974호),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4610호)에 대한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시 의견 참조[제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사자료(2022. 9. 22.) 참조]

2.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상속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예외 없이 승계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경우 미성년 상속인의 인식 및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불승계를 규정하여 상속인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으며, 상속재산·채무는 상속개시시에 바로 확정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바, 개정안에 따른 경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을 상속채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문 규정만으로는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다는 의미인지 등이 불분명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